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2023.12.26 조례 제203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471

제1장 <삭제 2023.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6.12.23)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6.12.23)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2017.9.22, 2023.11.1>

③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개정 2016.12.23)

제4조(시장의 책무)<조제목개정 2023.11.1>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1.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 과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제2장 <삭제 2023.11.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조제목 개정 2023.11.1>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3.1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1.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1.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1.1>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1.1>
5. <삭제 2023.1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조제목 개정 2023.11.1>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시장은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개정 2023.11.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11.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1.1>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1.1>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3장 <삭제 2023.1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9.22>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11.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23.11.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조제목 개정 2023.11.1>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1.1>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1.1>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1.1>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1.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1.1>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11.1>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1.1>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3.11.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23.11.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7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 등의 수도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23.12.26]

제6장 <삭제 2023.11.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9.22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1.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26.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